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642
----------	------

2026년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6. 4.15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6. 4.15
4. 상정일자 :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6. 4.24)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원안 가결

##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동률)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3고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 직접 타격을 입은 대상을 밀착 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친환경 차량 전환을 통한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편성함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1조 4,857억원에서 1조 4,570억원이 증가한 52조 9,42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조 9,820억원에서 1조 541억원이 증가한 38조 36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조 5,037억원에서 4,029억원이 증가한 14조 9,066억원임

### 1.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안은 총 52조 9,42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4,570억원 (2.8%) 증가함
-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중 1조 385억원을 결산 전 이입하고, 정부의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852억원을 증액하함. 그리고 회계 간 세입·세출 조정을 위한 내부거래 증액 3,333억원을 반영함

구분	2026년 추경예산(안)	2026년 기정예산	증 감	비 율
총 규모	529,427	514,857	14,570	2.8
자체 수입	323,056	323,056	-	-
시세	263,543	263,543	-	-
세외수입	59,513	59,513	-	-
경상적 세외수입	39,541	39,541	-	-
임시적 세외수입	11,681	11,681	-	-
지방행정제재금 · 부과금	7,508	7,508	-	-
지난연도수입	782	782	-	-
지방교부세	450	450	-	-
국고보조금	103,543	102,691	852	0.8
공채및차입금	18,417	18,417	-	-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83,961	70,243	13,718	19.5
순세계잉여금	12,324	1,939	10,385	535.7
기타보전수입등	1,002	1,002	-	-
내부거래	70,636	67,303	3,333	5.0

## 2.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안의 중점 지원방향과 주요 세출사업은 첫째,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계층 밀착지원에 1,202억원을 편성함
  - ①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 대응자금 3천억원을 긴급 추가 투입하고, 택시·화물 등 운송사업자를 위한 유가보조금도 늘리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811억원을 집중 투입함
  - ② 긴급 물류비 바우처,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 등 수출 판로개척 지원 등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88억원을 지원함
  - ③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강화, 청년 월세 특별배정 신규 시행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303억원을 반영함
- 둘째,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내연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통한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에 4,976억원 반영함
  - ①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4,695억원을 편성함
  - ② 수소버스·전기버스·전기화물차를 확대하는 내연차량 친환경 전환에 281억원을 지원함
- 셋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비 매칭분 전액인 1,529억원을 편성함
  - 이 사업은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층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시민은 소득계층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 정부는 지난 4월 11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피해지원금 지급 시

작일을 4월 27일로 확정하고, 지방비 편성 전이라도 국비를 선 집행해 피해지원금을 신속 지급하라고 요청함

- 이번 임시회 일정을 고려할 때, 국비를 금번 추경예산안에 포함시켜 의회 심의·의결을 받을 경우 정부가 정한 지급 일정 준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회기 중 국비를 간주처리하여 자치구에 교부함
  - 서민층 대상 신속한 피해 지원과 정부 시책의 전국 통일적인 집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감안해주시고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넷째, 자치구의 민생현안과 추경 편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정산분 중 3,530억원을 조기 지원하겠습니다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 1.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과 제안경위<sup>1)</sup>

- 「지방재정법」 제45조<sup>2)</sup>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sup>3)</sup>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3월 말, '26년도 제1회 추경안을 제출하였고, 국회도 4월 10일 추경예산을 수정의결 하였음<sup>4)</sup>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도자료('26. 4. 1)를 배포하며 중동발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지난 4월 15일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로 제출하여,<sup>5)</sup>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2)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3)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기관은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3조에 준하여 예산편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수정 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편성기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① 의안번호 : 2217938, ② 제안(정부) : '26. 3.31, ③ 의결 : '26. 4.10, ④ 의결결과 : 수정가결

5)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① 의안번호 : 3642, ② 제안(시장) : '26. 4.15, ③ 회부 : '26. 4.15

##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1조 4,856억원 대비 2.8%, 1조 4,570억원을 증액한 52조 9,426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표 3-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④	기정예산 증·감액 ⑤=④-①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 ⑤/①
	①=②+③	당초예산 ②	간주처리 ③			
총 계 규 모	51,485,674	51,477,818	7,856	52,942,692	1,457,017	2.8
일 반 회 계	36,981,938	36,978,664	3,273	38,036,075	1,054,137	2.9
특 별 회 계	14,503,736	14,499,153	4,582	14,906,616	402,880	2.8

-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1조 541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바,
  - '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중 일부인 1조 317억 5,600만원을 결산 전 세입예산으로 이입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내 시된 국비를 반영하고자 **국고보조금**등에 대하여 223억 8,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기정예산(36조 9,819억 3,800만원)보다 2.9%, 1조 541억 3,700만원 증액된 38조 360억 7,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인 바,
  -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sup>6)</sup>와 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에 대해 정하고 있어,<sup>7)</sup> 금번 추경안을 통해 결산상 잉여금을 결산전 세입처리하는 것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됨

6)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해야 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2. 결산상 잉여금 중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7)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표 3-2〉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안)	주요 증감 내역
총 계	36,981,938	1,054,137	38,036,075	
보 조 금	8,063,003	22,380	8,085,384	
국 고 보 조 금 등	8,063,003	22,380	8,085,384	◦국고보조금 21,77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0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3,188	1,031,756	1,344,944	
순 세 계 잉 여 금	-	1,031,756	1,031,756	◦순세계잉여금 1,031,75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의 경우, 기타특별회계인 **교통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2개의 특별회계의 세입과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기정예산(14조 5,037억 3,600만원)보다 2.8%, 4,028억 8,000만원 증액된 14조 9,066억 1,6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기정예산(2조 13억 3,200만원)보다 19.9%, 3,998억 8,000만원 증액된 2조 4,012억 1,200만원으로 증액 편성요청하는 것인 바,

■ 일반회계로부터 **기타회계전입금** 3,302억 9,900만원<sup>8)</sup>,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628억 3,200만원,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67억 4,8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예산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8) 교통사업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3,302억 9,900만원) 세부내역

-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 2,942억 9,900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택시유가보조금, 교통관리계정) : 150억원
- 일반회계 전입금(화물유가보조금, 교통관리계정) : 210억원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2조 2,214억 2,700만원)보다 0.1%, 30억원 증액된 2조 2,244억 2,700만원으로 증액 편성요청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되는 기타회계전입금 3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표 3-3〉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안)	주요 증감 내역
특별회계	14,503,736	402,880	14,906,616	
기타특별회계	12,383,733	402,880	12,786,613	
교통사업계	2,001,332	399,880	2,401,212	
국고보조금	211,678	62,832	274,510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62,832
순세계잉여금	22,231	6,748	28,980	◦순세계잉여금(교통관리계정) 6,748
기타회계전입금	783,993	330,299	1,114,292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294,299 ◦일반회계 전입금 (택시) 15,000 ◦일반회계 전입금 (화물) 21,000
주택사업계	2,221,427	3,000	2,224,427	
기타회계전입금	409,723	3,000	412,723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3,0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표 3-4〉 세입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52,942,692	100.0	51,485,674	100.0	1,457,017	2.8
	지 방 세 수 입	26,354,319	49.8	26,354,319	51.2	-	-
	세 외 수 입	5,951,285	11.2	5,951,285	11.6	-	-
	경 상 적 세 외 수 입	3,954,130	7.5	3,954,130	7.7	-	-
	임 시 적 세 외 수 입	1,168,062	2.2	1,168,062	2.3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50,848	1.4	750,848	1.5	-	-
	지 난 연 도 수 입	78,243	0.1	78,243	0.2	-	-
	지 방 교 부 세 등	44,974	0.1	44,974	0.1	-	-
	보 조 금	10,354,312	19.6	10,269,099	19.9	85,212	0.8
	국 고 보 조 금 등	10,354,312	19.6	10,269,099	19.9	85,212	0.8
	시·도비보조금등	-	-	-	-	-	-
	지 방 채	1,841,709	3.5	1,841,709	3.6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96,091	15.9	7,024,286	13.6	1,371,804	19.5
	보 전 수 입 등	1,332,522	2.5	294,017	0.6	1,038,505	353.2
	내 부 거 래	7,063,568	13.3	6,730,268	13.1	333,299	5.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괄표, p.8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51조 4,856억 7,400만원)보다 2.8%, 1조 4,570억 1,7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바,

- **일반회계**의 경우, 1조 541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써 ① 자치구가 정부 매칭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5회계연도 결산으로 자치구에 교부되어야 할 **조정교부금**중 일부인 3,526억 6,900만원, ②**고유가 피해지원금** 1,529억 6,7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하고자 편성·의결된 정부 추경 결과를 반영하여 국고보조사업인 ③**전기차 보급** 164억 3,400만원, ④**수소차 보급** 117억 1,000만원 등 11개 실·국·본부의 36개 세부사업<sup>9)</sup>에 대해 조정을 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 2개 기타특별회계의 6개 세부사업에 대해 4,028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고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1,570억 8,000만원, **기후동행카드 운영** 1,068억원 등 5개 세부사업, 3,998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하고,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청년 월세 지원** 1개 세부사업에 대해 30억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9) 일반회계 36개 세부사업에는 사업별설명서 작성 비대상인 재무활동 5개 세부사업이 포함됨

〈표 3-5〉 세출총괄표(기능별)

(단위 : 백만원, %)

분 야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 감 륜
	예 산 액	구 성 비	예 산 액	구 성 비		
총 계	52,942,692	100.0	51,485,674	100.0	1,457,017	2.8
일반공공행정	9,253,499	17.4	8,647,275	16.8	606,224	7.0
공공질서및안전	1,700,699	3.2	1,700,699	3.3	-	-
교육	4,482,934	8.4	4,482,934	8.7	-	-
문화및관광	1,129,549	2.1	1,129,549	2.1	-	-
환경	2,696,088	5.0	2,667,944	5.1	28,144	1.0
사회복지	19,401,358	36.6	19,365,291	37.6	36,066	0.1
보건	793,195	1.5	790,387	1.5	2,807	0.3
농림해양수산	45,856	0.1	45,856	0.1	-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56,129	1.4	702,535	1.3	53,594	7.6
교통및물류	7,404,105	13.9	6,673,925	12.9	730,179	10.9
국토및지역개발	2,759,535	5.2	2,759,535	5.3	-	-
과학기술	6,857	0.0	6,857	0.0	-	-
예비비	126,836	0.2	126,836	0.2	-	-
기타	2,386,001	4.5	2,386,001	4.6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괄표중 기능별, p.9~11

### 3. 세입예산 관련 검토

#### 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 1) 지난해회계연도 세계잉여금<sup>10)</sup>에 대한 세입처리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는 '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하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3조 109억 300만원)중 1조 317억 5,600만원을 세입예산안의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로 편성 요청한 것임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sup>11)</sup>는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세계잉여금**을 결산전 이입하는 것은 가능한 편성 사례로 판단됨

-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sup>12)</sup>에 따라 ①법정의무경비를 정산하는 것은 물론 관련 조례<sup>13)</sup>에 따라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일반

10) 세입과목인 잉여금은 ① 순세계잉여금, ② 지정재원 잉여금 ③ 기타 법정잉여금으로 구성됨 :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5. 7), p.54~55

1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1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해야 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2. 결산상 잉여금 중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13)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

회계 세계잉여금중 ②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5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③주택진흥기금에도 10% 이상을 의무 적립하여야 하는 바, 법정 의무경비와 조례에 따른 의무 적립을 공제한 잔여 가용재원 즉, 순세계잉여금을 회계연도 개시 이후 결산전 세입예산에 이입할 수 있음

○ '2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세계잉여금(3조 109억 300만원)은 자치구 전출(조정교부금 등 8,237억 600만원), 교육청 법정 전출(4,944억 400만원), 타 회계 전출(489억 7,600만원) 등의 ①법정 의무경비(1조 3,670억 8,700만원)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며

-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무적립<sup>14)</sup>(8,219억 700만원)과 ③주택진흥기금 의무적립<sup>15)</sup>(1,643억 8,100만원)을 제외하게 되면, 회계연도중 가용가능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575억 2,600만원으로 검토됨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14)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3조 109억 300만원)중 법정 의무경비(1조 3,670억 8,700만원) 정산후 잔액 50%(8,219억 700만원) 이상을 적립하여야 함

15)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3조 109억 300만원)중 법정 의무경비(1조 3,670억 8,700만원) 정산후 잔액 10%(1,643억 8,100만원) 이상을 적립하여야 함

〈표 3-6〉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사용계획(안) 및 세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용계획안		제1회추경안 세입예산안	세입편성후 가용재원
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 ㉑	3,010,903	1,031,756	
법정의무 경비정산	소 계 ㉒	1,367,087		
	조정교부금	646,365 <sup>주1)</sup>	352,969	
	재정보전금	79,407 <sup>주2)</sup>		
	시세징수교부금	97,933 <sup>주3)</sup>		
	교육청전출	494,404 <sup>주4)</sup>		
	타회계전출	48,976		
조례상 기금적립	소 계 ㉓	986,28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적립	821,907 <sup>주5)</sup>	100,000	
	주택진흥기금적립	164,381 <sup>주6)</sup>		
순세계 잉여금	가용재원 {㉑-(㉒+㉓)}	657,526 <sup>주7)</sup>	578,787	78,739

주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22.6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주2) '25년 공동재산세 전출금 결산 결과 초과징수분에 대한 정산분 반영

주3) '25년 시세입 초과징수분의 교부금을 '26년 예산으로 지급함에 따라, 이를 추경 반영

주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①지방세 정산분(2,883억 8,200만원),

② 담배소비세 정산분(40억 800만원), ③지방교육세 정산분(2,020억 1,300만원)

주5)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적립금(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정산금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

주6)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주택진흥기금계정적립금(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정산금을 공제한 금액의 10% 이상)

주7) 순세계잉여금(6,575억 2,600만원)중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 편성액을 차감한 실제 가용재원은 787억 3,900만원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담당관-4710 ('26. 4.17.)재구성

- 서울시가 제출한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 편성요청된 세계잉여금은 1조 317억 5,600만원으로써 ①법정의무경비 중 자치구 조정교부금(6,463억 6500만원)의 54.6%, 3,529억 6,900만원과 ②조례에 따라 법정의무경비를 정산한 세계잉여금의 50%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의무적립 하여야 하는 8,219억 700만원 중 12.2%, 1,000억원, 그리고 ③법정의무경비와 조례에 따른 의무적립 등의 모든 정산을 마친 순수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6,575억 2,600만원)중 88.0%, 5,787억 8,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2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88.0%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 우선 반영할 경우, 회계연도 중 가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87억 3,900만원으로 검토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된 이후 가용재원의 한정성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sup>16)</sup> 세입과목 중 잉여금(711)은 가용재원의 규모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711-01)”과 “기타 법정잉여금(711-03)”을 구분하여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제출된 추경예산안 세입명세서에는 법정정산분(자치구 조정교부금 등)과 가용재원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 “순세계잉여금” 단일 과목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바, 향후에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한 “세입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6)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5. 7), p.54-55

## 2) 국고보조금등<sup>17)</sup>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등**(511)은 정부추경과 회계연도 개시이후 중앙정부의 내시 변경 등에 따라 기정예산(8조 630억 300만원) 대비 0.28%, 223억 8,000만원이 증액된 8조 853억 8,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국고보조금**(511-01)은 기정예산(7조 6,460억원)보다 217억 7,100만원 증액된 7조 6,678억 6,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고유가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수소차 보급**(85억 6,000만원 증액), **전기차 보급**(55억 8,000만원 증액)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36억 3,800만원 증액) 등을 포함한 11개 세부사업에 대해 국비교부액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것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sup>18)</sup>의 경우, 기정예산(901억 9,100만원)보다 6억 900만원 증액된 908억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3억 9,300만원 증액) 및 **일상돌봄 서비스**(2억 1,600만원 증액) 지원에 따른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17) 세입과목인 **국고보조금등**은 ① **국고보조금**, 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③ **기금**으로 구성됨 :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5. 7), p.53

1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폐지(’23. 6. 9, 타법폐지, 시행 ’23. 7.10)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23. 6. 9. 제정, 시행 ’23. 7.10)으로 인하여 기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의 명칭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로 변경

〈표 3-7〉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증액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액	추경예산(안)	증액편성내역
국고보조금등 <sup>주1)</sup>		8,063,003	22,380	8,085,384	
국고보조금		7,646,092	21,771	7,667,8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아동센터 청년인턴 운영 500</li> <li>◦ 자립지원전담기관 보조인력 지원 9</li> <li>◦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사업 310</li> <li>◦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638</li> <li>◦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222</li> <li>◦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돌봄 보조 인력지원 48</li> <li>◦ 긴급복지지원사업 2,050</li> <li>◦ 수소차 보급 8,560</li> <li>◦ 전기차 보급 5,580</li> <li>◦ 정신요양시설 보조인력 지원 28</li> <li>◦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824</li> </ul>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90,191	609	90,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93</li> <li>◦ 일상돌봄서비스 216</li> </ul>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p.25-26

주1) 동 세입과목 중 기금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감조정이 요청되지 않음

## 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기타특별회계인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목에 대해 증액 편성을 요청한 것으로서, 기정예산(14조 5,037억 3,600만원)보다 2.8%, 4,028억 8,000만원 증액된 14조 9,066억 1,6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인 바,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2조 133억 3,200만원) 대비 19.9%, 3,998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2조 2,214억 2,700만원) 대비 0.1%, 30억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여 제출한 것임

〈표 3-8〉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안)	주요 증감 내역
특별회계	14,503,736	402,880	14,906,616	
공기업특별회계	2,120,003	-	2,120,003	
기타특별회계	12,383,733	402,880	12,784,613	
교통사업특별회계	2,001,332	399,880	2,40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고보조금 62,832</li> <li>◦순세계잉여금 6,749</li> <li>◦기타회계전입금 330,299</li> </ul>
주택사업특별회계	2,221,427	3,000	2,224,427	◦기타회계전입금 3,000

### 1)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경정

- 서울시는 다음연도 본예산안 편성 시, 당해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전망치”를 세입예산안에 일부 선반영하고, 이듬해 결산결과에 따라 추경을 통해 실제 발생액과의 차액을 경정하는 사례가 있는바,

- '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81억 8,300만원)을 일부 선반영하였으나, '2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초과 세입이 발생하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67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9〉 교통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5회계연도 결 산 결 과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증액	추경예산(안)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25,622	22,231	6,748	28,980
교 통 관 리 계 정	14,932	8,183	6,748	14,932
주 차 장 관 리 계 정	10,690	14,048	-	14,04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7004 ('26. 4.16)

## 2)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경정

-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경정은 회계연도 개시 이후 추가되는 중앙정부 국비 교부액을 반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사업에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기정예산(2,116억 7,800만원)보다 628억 3,2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3) 내부거래 조정에 따른 세입경정

-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내부거래의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회계 간 내부거래 규모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내부거래 세입예산으로 타회계 전입금을 기정예산(1조 120억 3,300만원)보다 3,302억 9,9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일반전입금 2,942억 9,900만원과 택시 유가보조금 (150억원) 및 화물 유가보조금(210억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을 세입예산에 전입시키고자 편성 요청한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내부거래 세입예산을 기정예산(5,680억 8,200만원)보다 30억원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주택진흥 등 고유목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일반전입금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4. 세출예산 관련 검토

### 가. 예산총칙의 적정성

- 서울시가 제출한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sup>19)</sup>은 당초 본예산 심사시 의결('24.12.13)된 예산총칙 중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제1조)**을 수정요청한 것으로, 추경예산안을 통해 세입·세출에 대한 증액 편성을 요청함에 따라 예산총칙 제1조를 경정하려는 것임
  
- 예산총칙 **제1조** 중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당초 본예산을 통해 정한 총액(51조 4,778억 1,800만원)을 52조 9,426억 9,200만원으로 증액조정하려는 것으로,
  - 추경안을 통해 기정예산(51조 4,856억 7,400만원)<sup>20)</sup>보다 1조 4,570억 1,700만원 증액된 52조 9,426억 9,200만원으로 요청하여 ·세출 예산총액도 동일한 규모(52조 9,426억 9,200만원)로 조정 요청한 사안으로 판단됨
  
  - **일시차입한도액**의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을 통해 정한 총액(1조 1,000억원)대로 경정없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19)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① 예산의 구성요소 중 하나가 되는 것으로서 ② 세입·세출 예산과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채와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예비비 및 이용 등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③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 보완적인 효력을 갖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0) 본예산 편성액(51조 4,778억 1,800만원)과 간주처리(78억 5,600만원)를 포함한 것임

〈표 3-10〉 본예산과 추경안 간 예산총칙 제1조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총액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총칙 제1조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총액		증감	
	'26년도 본예산	'26년도 제1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총 계	51,477,818	52,942,692	1,457,017	2.8
일 반 회 계	36,978,664	38,036,075	1,054,137	2.9
특 별 회 계	14,499,153	14,906,616	402,880	2.8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120,003	2,120,003	-	-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100,000	1,100,000	-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20,003	1,020,003	-	-
기 타 특 별 회 계	12,379,150	12,786,613	402,880	3.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271,141	2,271,141	-	-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2,001,332	2,401,212	399,880	19.9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09,647	309,647	-	-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2,221,427	2,224,427	3,000	0.1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808,215	1,808,215	-	-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495,957	495,957	-	-
학 교 용 지 부 담 금 특 별 회 계	11,547	11,547	-	-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2,165,816	2,165,816	-	-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28,257	28,257	-	-
소 방 특 별 회 계	1,065,808	1,065,808	-	-

※ 자료근거 : '26년도 예산서 및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구성

## 나. 국비 증·감에 따른 추경 편성요청 사업

○ 정부 추경과 회계연도 개시이후 국비 교부 규모가 변경되어 증액 편성을 요청한 세부사업은 행정국 소관 **고유가 피해지원금**(1,529억 2,100만원), 교통실 소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1,570억 8,000만원), 기후환경본부 소관 **전기차 보급**(164억 3,400만원)과 **수소차 보급**(117억 1,000만원)을 포함한 15개 사업으로, 3,534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sup>21)</sup>

- 교통실 소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6년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K패스 정률·정액형 상품의 할인 및 환급률 상향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국비: 시비 40:60)으로,

■ 지난 '26년 4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628억 3,200만원이 교부되어<sup>22)</sup> 금번 추경안을 통해 시비(942억 4,800만원)를 매칭하고자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기후환경본부 소관 **전기차 보급**과 **수소차 보급**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수요 부담에 대응하고 내연기관 중심의 교통체계를 친환경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 **전기차 보급**은 지난 '26년 4월 17일 국고보조금 교부액(55억 8,000만원)이 확정내시되어<sup>23)</sup> 금번 추경안을 통해 시비(108억 5,400만원)를 매칭하고자 증액 편성요청한 것이며,

21) 복지실 소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별설명서, p.64)는 9억 3,400만원을 증액요청하고 있으나 예산과목 중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대해 △4,010천원(국비 1,790천원 포함) 감액요청 하였음

2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475 ('26. 4.15) “'26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추경반영 국고보조금 배분 변경 확정내시 통보”

23)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1256 ('26. 4.17) “2026년 전기차 보급사업 확정내시 내역 조정 알림(2차)”



〈표 3-11〉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 증액편성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sup>주1)</sup>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국비	시비		
여성가족실	지역아동센터 청년인턴 운 영 ( 신 규 )	(x-) -	(x500) 1,000	500	500	(x500) 1,000
”	자립지원전담기관 보조인력 지원(신규)	(x-) -	(x9) 19	9	9	(x9) 19
복지실	일상돌봄 서비스	(x865) 1,298	(x216) 324	216	108	(x1,081) 1,622
”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지원	(x745) 4,276	(x310) 468	310	158	(x1,055) 4,744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지원	(x17,234) 34,469	(x3,638) 7,276	3,638	3,638	(x20,873) 41,746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x8,224) 16,448	(x222) 444	222	222	(x8,446) 16,892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돌봄 보조 인력지원(신규)	(x-) -	(x48) 96	48	48	(x48) 96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x23,929) 51,955	(x393) 934	393	541	(x24,323) 52,889
”	긴급복지 지원	(x31,300) 46,950	(x2,050) 3,075	2,050	1,025	(x33,350) 50,025
교통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 K 패 스 )	(x183,593) 327,481	(x62,832) 157,080	62,832	94,248	(x246,425) 484,561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보급	(x96,860) 132,102	(x5,580) 16,434	5,580	10,854	(x102,440) 148,536
”	수소차 보급	(x15,905) 21,250	(x8,560) 11,710	8,560	3,150	(x24,465) 32,960
시민건강국	정신요양시설 보조인력 지원 ( 신 규 )	(x-) -	(x28) 57	28	28	(x28) 57
행정국	고유가 피해지원금 ( 신 규 )	(x-) -	(x-) 152,921	-	152,921	(x-) 152,921
주택실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x1,500) 3,010	(x824) 1,648	824	824	(x2,324) 4,658

주1)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건제순으로 기재

□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별설명서, p.173)

- 행정국 소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55만원(수도권 기준)<sup>27)</sup>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서울시 분담 예상분 1,529억 2,1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3-1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	152,921	152,92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151,305	151,305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151,305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	1,615	1,615	○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대경비 1,61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6. 4), p.174

- 금번 추경안에 서울시 분담분을 편성요청한 것은 지난 4월 10일, 정부 추경이 확정된 이후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시비 분담 예상분을 자체 추계하여 선제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 정부 추경이 확정된 이후 지난 4월 15일, 서울시가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국비 결정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국비 없는 국가사업’ 형태로 시비 분담 예상분을 선(先) 편성한 것으로 차후에 교부될 국비는 간주처리하여 집행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경안 제출일에 관련 국고

27)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1704 ('26. 4.12)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통보”

-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요 내용
- 소득계층별·지역별 차등 지원(1인당 10만원 ~ 최대 60만원)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 70%
수도권	55만원	45만원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지역/49개)	60만원	50만원	20만원
인구감소지역(특별지원지역/40개)			25만원

보조금 확정예산이 통보<sup>28)</sup>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안전부가 서울시로 통보한 총 사업비는 7,080억 1,000만원으로, 국비 4,956억 700만원과 지방비 2,124억 300만원이나,<sup>29)</sup> 추경안에는 시비 1,529억 2,1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어 실제 서울시가 분담할 시비(1,274억 4,100만원)보다 254억 8,000만원<sup>30)</sup>이 초과 편성요청된 것으로 검토되어 차기 추가경정예산으로 경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한시적이라 하나 중앙정부와 서울시 재원 분담 비율을 70:30으로 설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재원 분담 비율(30%)이 타 시·도(20%)보다 10%p 높은 바, 지난 '25년도 제2회 추경 당시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타 시·도보다 높은 분담률(15%p)을 부담하여 서울시는 지방채까지 발행한 사례가 있어 서울시에 대한 차등적 보조 비율이 관행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8)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1759 ('26. 4.15)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국고보조금 1차 확정예산 통보 및 교부 신청 안내”

29) 서울시(자치구 포함) 분담 내시액 : 2,124억 300만원  
- 서울시 분담분 (60%) : 1,274억 4,100만원  
- 자치구 분담분 (40%) : 849억 6,100만원

30) 서울시(자치구 포함) 분담 내시액(2,124억 300만원) 기준, 서울시 분담분(60%)은 1,274억 4,100만원으로 254억 8,000만원 초과 편성됨

〈표 3-13〉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시 · 도	총 계	국 비	지방 비	국 : 시 · 도
합 계	4,878,834	3,832,266	1,046,567	-
서울	708,010	495,607	212,403	70:30
부산	394,113	315,290	78,822	80:20
대구	280,050	224,040	56,010	80:20
인천	263,125	210,500	52,625	80:20
광주	162,593	130,074	32,518	80:20
대전	156,103	124,882	31,220	80:20
울산	107,882	86,306	21,576	80:20
세종	33,420	26,736	6,684	80:20
경기	973,389	778,711	194,677	80:20
강원	178,173	142,539	35,634	80:20
충북	178,996	143,197	35,799	80:20
충남	235,388	188,310	47,077	80:20
전북	228,470	182,776	45,694	80:20
전남	229,314	183,451	45,862	80:20
경북	309,594	247,675	61,918	80:20
경남	368,454	294,763	73,690	80:20
제주	71,753	57,402	14,350	80:20

※ 자료근거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1759('26. 4.15)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국고보조금 1차 확정예산 통보 및 교부 신청 안내”

## 다. 시비 증액에 따른 추경 편성요청 사업

- 금번 추경안중 시비를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은 22개 사업<sup>31)</sup>으로, 6,660억 6,8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경제실 소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별설명서 p.17)은 서울에 소재한 매출액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sup>32)</sup>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동 정세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도 및 연쇄도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기정예산(15억원)보다 100.0%, 15억원 증액된 30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복지실 소관 **돌봄SOS 사업 운영**(사업별설명서 p.76)은 '26년 3월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의 서비스 연간 이용한도액을 1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하고, 통합돌봄대상자중 긴급지원 등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일시재가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기정예산(360억 8,800만원)보다 5.3%, 19억 1,100만원 증액된 380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교통실 소관 **기후동행카드 운영**(사업별설명서 p.83)은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하여 만료 시까지 이용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월 3만원의페이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1,488억 6,300만원)보다 71.7%, 1,068억원 증액된 2,556억 6,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민생노동국 소관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사업별설명서 p.138)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오프라인 광역사랑상품권 1,000억원, 온라인 전용 상품권 5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페이백을 지원하기 위해 기정예산(85억 200만원)보다 182.2%, 154억 9,400만원 증액된 239억 9,600만원을 편성 요청하는 것임

31) 내부거래(4,374억 5,900만원) 지출 제외

- 기타회계전출금 3,332억 9,900만원, 기금전출금 1,041억 6,000만원

32)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자)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임

〈표 3-14〉 시비 증액에 따른 추경 편성요청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행정국	조정교부금	4,523,357	352,969	4,876,326
교통실	기후동행카드 운영	148,863	106,800	255,663
”	시내 버스 서비스 개선	350,010	100,000	450,010
”	운수업계(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106,593	21,000	127,593
민생노동국	서울 신용보증재단 출연	28,710	19,260	47,970
”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8,502	15,494	23,996
교통실	운수업계(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79,240	15,000	94,240
복지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39,950	5,644	45,595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21,848	5,556	27,404
경제실	서울 경제진흥원 출연	58,368	4,300	62,668
민생노동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32,466	3,256	35,723
주택실	청년월세지원	31,756	3,000	34,756
경제실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1,600	3,000	4,600
시민건강국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4,272	2,750	7,022
복지실	돌봄 SOS 사업 운영	36,088	1,911	38,000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1,500	1,500	3,000
민생노동국	전통시장 행사 지원	5,851	1,250	7,101
”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사업	1,295	1,173	2,468
복지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15,840	1,140	16,980
여성가족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30,844	527	31,371
디지털도시국	서울 AI 재단 출연	13,119	334	13,453
민생노동국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1,210	200	1,410

※ 세부사업은 증액 요청 규모 순으로 정렬, 내부거래 제외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사업별설명서 p.5)

- 여성가족실 소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은 방학중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정예산(308억 4,400만원)보다 1.7%, 5억 2,700만원 증액된 313억 7,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5〉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30,844	527	31,37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7,452	527	27,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학아침 돌봄인력 지원 20,000원*413개소*2시간*24일 396</li> <li>※(기존)오전10시→(변경)오전 8시 (2시간 확대)</li> <li>○ 방학 점심캠프 인력 지원 130</li> <li>50,000원*109개소*24일</li> </ul>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6. 4), p.6

- 동 사업은 방학 동안 지역아동센터 아침돌봄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10시에서 오전 8시로 2시간 앞당겨 운영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 가구를 대상으로 점심 캠프를 운영<sup>33)</sup>하기 위해 방학 아침돌봄 인력 지원비 3억 9,600만원과 점심캠프 인력 지원비 1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 요청한 것임
- 소요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방학 기간중 초등 돌봄 공백이 맞벌이·한부모 가구 등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아침·점심 시간대 돌봄을 강화하여 방학중 돌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나, 예산편성에 앞서 다음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첫째, 동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23~'25년) 매년 20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33)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9269 ('26. 4.16)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추진계획”

※사업기간: 2026. 7.20~8.21(5주간)

-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의 집행잔액 규모가 금번 추경을 통해 증액 편성요청한 5억 2,700만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26년도 본예산에는 308억 4,400만원을 편성하여 직전 3개 연도('23~'25년)와 비교하여 예산 규모를 이미 확대한 상황으로 3월 말 기준, 집행잔액이 219억 7,100만원(71.2%)인 점을 고려할 때, 당초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3-16〉 최근 3년간('23~'26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년)	최 종 예 산	예 산 현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불 용 률
2023	20,684	20,571	15,521	5,049	24.5
2024	24,962	24,762	21,563	3,199	12.9
2025	28,502	28,502	26,428	2,074	7.3
2026	30,844	30,844	8,873	21,971 (3월 말 기준)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6. 4), p.8 재구성

- 또한 금번 서울시 추경은 중동발 고유가·고물가 등 대외요인으로 인한 민생 피해 최소화와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에 우선 초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의 긴급성과 집행여력 등을 고려하면, 추경을 통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할 만큼 긴급한 사안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동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추경안 제출('26. 4.15) 다음날인 4월 16일에 수립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sup>34)</sup>,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내용에 대해 기본적인 계획조차 확정하지 않고 사업비를 편성 요청한 것으로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의 정밀성을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음

34)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9269 ('26. 4.16)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추진계획”

- 셋째, 동 사업 방침에 따르면<sup>35)</sup>, 점심캠프 인력지원은 자치구의 재정적 협조를 전제로 급식 지원을 위한 인건비를 우선 편성 요청한 것으로, 추후 자치구의 급식지원 재원확보 여부에 따라 금번 추경안에 편성 요청한 급식지원 인력에 대한 예산집행은 유동성이 내재된 것으로 사료됨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사업별설명서, p.39)

- 복지실 소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밖에 있으나,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층에 복지급여를 지급하고자 기정예산(218억 4,800만원) 대비 25.4%, 55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7〉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21,848	5,556	27,404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21,743	5,556	27,300	○ 복지급여지원 5,55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6. 4), p.40

- 사업별 설명서의 추경 증액 사유로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등 부족액 발생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기재하고 있고, 추경 편성을 위한 기자설명회 자료에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 지원 대상도 증가’로 명시<sup>36)</sup>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sup>37)</sup>와 관련하여 수급 신청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지난 4월 10일 의결된 정부 추

35)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9269 ('26. 4.16)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추진계획”

○ 협조사항(자치구) : 자치구별 방학점심캠프 급식예산 확보 필요

36) 통합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 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자동연계함

37) ①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②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해산장제급여

③기초생활수급자 급여-교육급여

경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정부 추경에는 동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관련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에 55억 5,600만원을 증액 요청하는 사유로 ‘정부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신청 증가로 서울형 기초보장 지원 대상도 증가’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국비에 대한 의무적 대응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의 취지가 위기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망을 서울시 차원에서 두텁게 하려는 것이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는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순세계잉여금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는 것으로<sup>38)</sup> 정하고 있는 바,
  -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도 '26년도 3월 31일 기준 집행잔액을 151억 6,900만원으로 적시하고 있어<sup>39)</sup> 금년도에 이미 편성된 예산액을 우선 집행하고, 회계연도 중 차기 추경을 통해 추가 필요분(55억 5,600만원)을 편성요청하는 것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편성사례일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편성요청한 사례가 '25회계연도 결산이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결산 전 순세계잉여금 전망액을 미리 편성하여 추경을 추진할 만큼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긴급한 사안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8)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39) 최근 4년간('23년~'2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최 종 예 산	예 산 변 경	예 산 현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집 행 륜
2023	17,732	900	18,632	18,201	431	97.7
2024	17,815	-	17,815	16,395	1,419	92.0
2025	18,151	3,300	21,451	21,279	171	99.2
2026	21,848	-	21,848	6,679	15,169	30.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6. 4), p.43 재구성

□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별설명서 p.91)

- 교통실 소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64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하고자 기정예산(3,500억 1,000만원)보다 28.6%, 1,000억원 증액된 4,500억 1,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3-18〉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350,010	100,000	450,010	
운수업계보조금	350,000	100,000	450,000	○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00,0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6. 4), p.92

- 서울시는 지난 2004년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시내버스 총 운송비용 대비 총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수업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도 본예산의 경우, '25년도 최종예산(4,575억 1,000만원) 보다 △23.5%, △1,075억원이 감액된 3,500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당해연도 부족분(5,864억원) 중 59.7%를 충당한 상태로 검토됨
-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1,000억원)이 추가 편성(4,500억 1,000만원)되어도 서울시가 산정한 당해연도 부족분(5,864억원)을 전부 해소하는데 한계(△1,289억원)가 있을 뿐만 아니라 '26년도 연도말 누적부채 또한 1조 1,35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9〉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누적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망)	'26년 (전망)
총 재정 소요액 ( C = A + B )	13,280	17,184	16,373	12,434	13,561	14,850
당해연도부족분(A)	7,489	8,465	7,303	4,976	5,127	5,864
전년누적부채(B)	5,791	8,719	9,070	7,458	8,434	8,986
재정지원예산액(D)	4,561	8,114	8,915	4,000	4,575	3,500
누적부채(E=C-D)	8,719	9,070	7,458	8,434	8,986	11,35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E-mail 협조

- 아울러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중 운수업계보조금은 본예산에는 지난연도 최종 예산 보다 △20% 이상 감액 편성하였다가 추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증액 결정하는 행태가 4회계연도 계속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0〉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연도별 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세 출 과 목	기 정 예 산	증 액 규 모	추 경 안
2026	계	350,010	100,000	450,0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	10
	운수업계보조금	350,000	100,000	450,010
2025	계	320,010	137,500	457,5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	10
	운수업계보조금	320,000	137,500	457,500
2024	계	330,010	70,000	400,0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	10
	운수업계보조금	330,000	70,000	400,000
2023	계	451,664	449,800	901,46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	10
	운수업계보조금	451,654	449,800	901,45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6. 4), p.8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8), p.98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6), p.575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3. 6), p.802

□ **중동발 위기상황 등 극복을 위한 사업**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별설명서 p.129)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p.134)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사업별설명서 p.146)
-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별설명서 p.150)
- **전통시장 행사 지원** (사업별설명서 p.153)

○ 금번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노동국 소관 사업(7개 세부사업)중 5개 세부사업은 추경사유를 중동발 위기 상황 등 극복을 위한 지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음

〈표 3-21〉 '26년도 제1회 추경안중 민생노동국 소관 세부사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안	추경 사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32,466	3,256	35,723	<b>중동발 위기 상황 등 극복을 위한</b> 소상공인 종합지원 확대
서울 신용 보증 재 단 출 연	28,710	19,260	47,970	<b>중동발 위기상황 등 극복을 위한</b> 피해 소상공인 위기대응 자금 신설 등
서울 광역 사랑 상품 권 발 행 · 운 영	8,502	15,494	23,996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광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페이백 지원
소 상 공 인 온 라 인 판 로 개 척 지 원	1,210	200	1,410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한 서울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운영 등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전 출	20,700	4,160	24,860	<b>중동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b>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대응 자금 신설 등 재원 반영
골 목 상 권 구 획 화 및 육 성 지 원	1,295	1,173	2,468	<b>중동발 위기에 따른 골목상권 경기 악화 대응</b> 위한 골목형 상점가 상권 추가 지정 및 육성 지원
전 통 시 장 행 사 지 원	5,851	1,250	7,101	<b>중동발 경기 악화로 침체되어 있는 소비심리 회복</b> 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운영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p.134)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사업별설명서 p.146)

○ 민생노동국 소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출연금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기정예산(287억 1,000만원)보다 192억 6,000만원 증액된 479억 7,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3-2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28,710	19,260	47,970	
출 연 금	28,710	19,260	47,970	○ ①신용보증재원 8,000 ○ ②보증료재원 11,26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6. 4), p.135

- 출연금에 대한 세부산출내역<sup>40)</sup>을 검토하면 ①신용보증재원(80억원)은 중동 피해 소상공인 위기대응 자금(1,000억원)에 대한 신용보증재원 80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이며
- ②보증료재원의 경우에는 동 재단이 보증을 제공하는 대가로 소상공인 등이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112억 6,0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임

40)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① 의안번호 : 3645, ② 제안(시장) : '26. 4.15, ③ 회부 : '26. 4.15

3-2. 2026년 추경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신용보증재원 (80억원)
  - 80억원 = 1,000억원(보증규모) / 12.5배(운용배수)
- 보증료재원 (112억 6,000만원)
  - 중동 피해 소상공인 위기 대응 자금 신규 재원 : 1,000억원
    - 34억원 = 1,000억원(보증규모) \* 1.0%(보증료율) \* 3.4년(평균상환주기)
  - 희망동행자금 증액 재원 : 당초 3,000억원에서 4,500억원 규모로 확대
    - 73억 5,000만원 = 1,500억원(보증규모) \* 1.0%(보증료율) \* 4.9년(평균상환주기)
  - 신속드림자금 증액 재원 : 당초 500억원에서 800억원 규모로 확대
    - 5억 1,000만원 = 300억원(보증규모) \* 0.5%(보증료율) \* 3.4년(평균상환주기)

-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sup>41)</sup>에 따라 미리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어<sup>42)</sup> 소관상임위의 의결결과에 따라 출연금 편성 여부도 연동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민생노동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의 경우, 기정예산(207억원)보다 41억 6,000만원 증액된 248억 6,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3-23〉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20,700	4,160	24,860	
기 금 전 출 금	20,700	4,160	24,8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동 피해 소상공인 위기대응 자금 신설 이차보전금 지출 1,670</li> <li>○ 희망동행자금 증액 이차보전금 지출 1,800</li> <li>○ 서울배달자금 증액 이차보전금 지출 330</li> <li>○ 신속드림자금 증액 이차보전금 지출 360</li> </ul>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6. 4), p.147

- 동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으로 전출되는 것으로, 해당 재원은 직접용자가 아닌 시중은행협력자금<sup>43)</sup>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임

○ 사업부서에서 위 2개 세부사업을 통해 신설하려는 중동 피해 소상공인 위기 대응 자금의 경우에는 금번 추경안의 제안이유와 부합하는 사례일 수 있으나,<sup>44)</sup>

4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2)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① 의안번호 : 3645, ② 제안(시장) : '26. 4.15, ③ 회부 : '26. 4.15

43) **직접용자**는 자금의 전액을 용자하게 되지만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시중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시중은행 자금을 저리로 용자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활용하고 서울시가 1.8~2.5%의 이자 차액을 보전(이차보전금)하는 방식임

- 기조성된 ㉠희망동행자금은 당초 조성규모(3,000억원)의 15.5%, 466 억원만을 시행하여 추가적인 증액 없이도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여 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중동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금번 추경안의 취지와 서울시 재원의 한정 성 등을 고려하면 증액 요청된 재원의 승인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업별설명서 등에 따르면 ㉡신속드림자금은 당초 조성규모(500 억원)보다 300억원을 증액할 것으로 계획하고, ㉠희망동행자금의 경우에 는 당초 조성규모(3,000억원)보다 1,500억원을 증액할 계획인 것으로 검토되나, ㉡신속드림자금은 신용보증재단의 '26년 3월 말 기준 용자 실 행률이 이미 95.7%로 확인됨
  - 따라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드림자금(실행률 95.7%)의 증액규모(300억원)를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소진율이 낮은 ㉠희망동행 자금(실행률 15.5%)의 증액규모(1,500억원)는 축소하는 등 자금 간 재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됨

〈표 3-24〉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 및 실적 ('26. 3월 말 기준)

(단위 : 억원, %)

세 부 내 역	본예산	실행액	실행률	잔액
희 망 동 행 자 금	3,000	466	15.5	2,534
서 울 상 생 배 달 자 금	200	63	31.3	137
신 속 드 림 자 금	500	479	95.7	21

※ 자료근거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부-543 ('26. 4.10)

44)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제안이유

-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제출함.

□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별설명서 p.150)

□ **전통시장 행사 지원** (사업별설명서 p.153)

○ 민생노동국 소관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은 골목형 상점가 5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공동마케팅 등 육성 지원을 하고자 기정예산(12억 9,500만원)보다 11억 7,300만원 증액된 24억 6,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3-25〉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1,295	1,173	2,468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95	1,173	2,468	○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 - 3,060,000원 * 50개소 153 ○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 - 20,400,000원 * 50개소 1,02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6. 4), p.151

○ 민생노동국 소관 **전통시장 행사 지원**은 중동발 경기 악화로 침체되어 있는 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12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이벤트를 개최하고자 기정예산(58억 5,100만원)보다 12억 5,000만원 증액된 71억 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3-26〉 전통시장 행사 지원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5,851	1,250	7,10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840	1,250	7,090	○ 기획이벤트 - 10,000,000원 * 125개소 1,25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6. 4), p.154

○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sup>45)</sup>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위 2개 세부사업은 “단체 구성 행사”, “상권방문 유도 행사”,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획이벤트”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행사나 이벤트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수 있어 선거일전 60일('26. 4. 4)부터 선거일('26. 6. 3)까지는 행사개최 및 후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럼에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이 중동발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원 투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 법령에 따라 추경예산안 의결 직후 동 사업을 즉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현실적 제약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편성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특히,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은 금번 추경안을 통해 기정예산(12억 9,500만원)보다 90.5%, 11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선거일까지는 사업 추진 및 예산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방선거가 종료된 이후 국내외 정세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별도의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5)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략)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서울시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p.159)

- 디지털도시국 소관 **서울시재단 출연**은 중동발 위기로 경영이 어려워진 서울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6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상권 AI·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기정예산(131억 1,900만원)보다 2.5%, 3억 3,400만원 증액된 134억 5,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27〉 서울시재단 출연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 정 예 산	증 액	추 경 ( 안 )	산 출 내 역
계	13,119	334	13,453	
출 연 금	13,119	334	13,4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데이터기반 소상공인 매출증대 프로젝트 용역 329</li> <li>○ 회의수당(3,000천원) 3</li> <li>○ 회의운영비(2,000천원) 2</li> </ul>

※ 자료근거 : ①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6. 4), p.160  
 ②서울특별시, 데이터전략과-4637 ('26. 4. 9), “AI·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 증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46)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46)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14(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동 사업의 내용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 증대를 위한 상권분석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sup>47)</sup> 것으로 중소기업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는바, 서울시가 지난 '26년 4월 10일 해당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를 완료(원안 동의)<sup>48)</sup>한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sup>49)</sup>에 따라 출연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어 관련 동의안<sup>50)</sup>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편성 요청된 출연금의 승인 여부는 관련 출연동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결과와 연계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음

47) 서울특별시, 데이터전략과-4637('26. 4. 9), “AI·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 증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48)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관리시스템(SIMS), "(협의번호 2026\_0010) 서울시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접수: '26. 4. 7, 검토: '26. 4. 9, 결과: 협의완료(원안동의))

49)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② (생략)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SI재단 출연 동의안

① 의안번호 : 3646, ② 제안(시장) : '26. 4.15, ③ 회부 : '26. 4.15

□ **조정교부금** (사업별설명서 p.169)

- 행정국 소관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51)에 따라 자치구 재원조정을 위해 보통세의 22.6% 등을 교부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안에는 전년도 서울시 보통세 세입의 예·결산 차이로 발생하는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중 일부를 선(先) 교부하고자 3,529억 6,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28〉 조정교부금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 정 예 산	증 액	추 경 (안)	산출내역
계	4,523,357	352,969	4,876,326	
자치구조정교부금	4,523,357	352,969	4,876,326	○ 2025년 조정교부금 예결산차액(1차) 352,96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6. 4), p.169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sup>52)</sup>는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에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결산상 잉여금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sup>53)</sup>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5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조정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22.6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5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예산계상)

-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53)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구비 분담분 마련 등 자치구의 민생 현안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5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결산전망액 5,851억 900만원 중 60.3%, 3,529억 6,900만원을 우선 교부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표 3-29〉 '25회계연도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5년도 예산액 (A)	'25회계연도 결산전망액(B)	결산차액 (B-A)
계	4,286,932	4,933,298	646,365
보통세분	4,265,110	4,915,231	650,121
일반조정교부금 (90%)	3,838,599	4,423,708	585,109
특별조정교부금 (10%)	426,511	491,523	65,012

〈표 3-30〉 자치구별 결산차액 추경 편성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편성액	구 분	추경 편성액
종 로 구	12,717	마 포 구	15,143
중 구	12,286	양 천 구	14,053
용 산 구	12,866	강 서 구	18,182
성 동 구	12,536	구 로 구	15,243
광 진 구	13,321	금 천 구	12,299
동 대 문 구	14,266	영 등 포 구	15,688
중 량 구	14,347	동 작 구	13,428
성 북 구	15,217	관 약 구	15,205
강 북 구	13,580	서 초 구	16,474
도 봉 구	12,786	강 남 구	-
노 원 구	17,732	송 파 구	20,097
은 평 구	15,636	강 동 구	16,143
서 대 문 구	13,723		
일 반 조 정 교 부 금 계			352,96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E-mail 협조

## 라. 기타 검토의견(사전절차 이행 필요 사업)

### □ 사전절차(출자·출연동의)가 필요한 사업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sup>54)</sup>은 출자금(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예산안 편성 전에 미리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출자금(출연금)을 편성요청한 4건의 세부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일('26. 4.15)까지 시의회로부터 출자금(출연금) 편성을 위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나
  - 해당 출자·출연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제33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출자금(출연금) 편성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31〉 출자·출연 동의안 처리 결과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실·본부·국)	예산액	의안명	소관 위원회	제출일	의안처리 결과
서울교통공사 출자 (교통실)	100,000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교통 위원회	'26. 4.15	원안가결 ( '26. 4.22)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경제실)	4,30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기획경제 위원회	'26. 4.15	원안가결 ( '26. 4.23)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민생노동국)	19,260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26. 4.15	원안가결 ( '26. 4.23)
서울시재단 출연 (디지털도시국)	33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재단 출연 동의안	주택공간 위원회	'26. 4.15	원안가결 ( '26. 4.23)

54)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sup>55)</sup>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5일 전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동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난 4월 15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된 바,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sup>56)</sup>의 단서조항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금번 회기에 출자·출연금을 편성요청한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고유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예외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제도는 출자·출연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출자·출연금 편성 전까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부서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전절차가 이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55)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발의 및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6)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발의 및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를 필요한 사업

- 디지털도시국 소관 **서울시AI재단 출연**은 금번 증액 편성요청된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점포경영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가치 제고를 위해 상권 빅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청년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AI·빅데이터기반 소상공인 매출 증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 운용 지침」 제4조<sup>57)</sup>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정보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 및 경영 안전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sup>58)</sup>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 57)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 운용 지침」 제4조(대상 사업)

- ① 중소기업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법 제20조의5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융자, 보험, 투자, 펀드 조성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한 금융(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상용화기술개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 기술개발인프라, 기술지도 등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3.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화, 창업공간 지원 등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고용안정, 인력공급, 인적자원훈련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공급 및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5.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수출 인프라 조성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 및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6. 내수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인프라 조성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7.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정보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8. 기타 중소기업의 생산 및 경영 활동 등에 필요하거나 공익성을 가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58)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sup>59)</sup>도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경영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sup>60)</sup>

59)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5. 7), p.372

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60) 중소벤처기업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서-2026-010 ('26. 4. 9) “서울시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추경)”

## 5. 예산안 첨부서류 관련

- 「지방재정법」은 예산의 **성과계획서**<sup>61)</sup>, **성인지예산서**<sup>62)</sup>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sup>63)</sup>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의 단서조항<sup>64)</sup>을 통해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한 것으로 사료됨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에는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추가경정예산안과 일치되도록 수정<sup>65)</sup>한 후 제출하여 예산안과 성과계획서 등 첨부서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61)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2)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이하생략)

64)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65) 행정안전부, 「202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5. 7), p.171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발생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2026. 4.24)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3642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1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 2. 주요내용

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 증감	%
계	52,942,692,044	51,485,674,712	1,457,017,332	2.8
일반회계	38,036,075,341	36,981,938,009	1,054,137,332	2.9
특별회계	14,906,616,703	14,503,736,703	402,880,000	2.8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지은(☎ 02-2133-6808)